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생제 내성관리 업무는 의료관련감염,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등 질병관리청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으로 업무 위임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없 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질병관리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법 제8조의2제1항·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8조의2제1항·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
2. 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5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및 법 제8조의4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76조제1항에 따라 <u>법 제8조의2 제1항·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 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</u> <개정 2020. 9. 11.>	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76조제1항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<u>법 제8조의2제1항·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</u> 2. <u>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5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및 법 제8조의4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08 (044) 202 - 2507